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21(월) 평창군수
- 회부일자 : 2016. 11. 25(금)
- 상정일자 :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9) : 상정
 -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0)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3,39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7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48백만원이 증액된 389,019백만원, 특별회계는 225백만원이 증액되어 64,373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112백만원, 조정교부금 4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828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3백만원, 지방교부세 5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8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0백만원 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6,574백만원, 재무활동 △16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859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33백만원,
재무활동 358백만원 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류지웅)

□ 추경예산안 규모

-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453,39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73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는 389,01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48백만원(1.45%)
 - 특별회계는 64,37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백만원(0.35%)이 각각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48백만원이 증액된 389,019백만원으로
 -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8백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이 증액되어 180,909백만원이 편성 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400백만원이 증액되어 7,220백만원이며
 -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 4,828백만원이 증액되어 122,044백만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208백만원이 증액된 19,095백만원이 편성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48백만원이 증액된 389,019백만원으로
 - 정책사업비 6,574백만원(2.09%)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 △167백만원(△0.82%),
행정운영경비 △859백만원(△1.77%)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보건 863백만원(10.01%)
문화및관광 5,514백만원(9.14%)
농림해양수산분야 2,016백만원(3.37%) 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은
안전건설과 61,099백만원(15.71%)
자치행정과 49,586백만원(12.75%)
문화관광과 47,047백만원(12.09%)
주민생활지원과 46,957백만원(12.07%)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자본지출 6,118백만원(3.22%)
경상이전 545백만원(0.55%)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감액 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64,37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백만원(0.35%)이 증액된 것으로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9백만원(△4.78%)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0백만원(△17.82%)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3년 비점오염저감사업 반환금 33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규모에 변동이 없음.

□ 종합검토의견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분을 반영하였으며
- 조정교부금은 4개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48억 2,800만원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2억 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분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음.
- 재원별로는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58억원 중
보조사업은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당초 및 1회추경에 예산을 승인 받고 3회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16개 사업에 2억 9천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나, 소액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반영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1〉 예산 편성후 전액(100%) 삭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삭감예산액	비고
합계	16개 사업	291,400	
기획감사실	진부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50,000	당초예산
문화관광과	강원자동차챌리대회 부담금	33,000	1회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지원	15,000	당초예산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 지원(보조)	33,000	당초예산
경제체육과	유치대상기업 타당성분석 및 사전검증 용역	4,000	1회추경
	강원역전 마라톤 대회 출전 지원	10,000	당초예산
환경위생과	오대천 생태습지 잡초제거 모니터링 인건비	14,700	당초예산
	음식물자원화 처리비용 산정용역	10,000	당초예산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	15,000	1회추경
농축산과	축산인 한마음대회	5,000	당초예산
	젓소 비가림 운동장 설치 지원	35,000	당초예산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도비)	4,100	1회추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지원(국고)	5,600	당초예산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국고)	50,000	1회추경
기술지원과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사업	5,000	당초예산
	신품종 종자공급 차액지원	2,000	당초예산

※ 당초예산 : 2015.12.18 의결, 1회추경 : 2016. 5.20 의결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71건에 640억원 임.
- 사유별로 살펴 보면
 - 절대공기 부족 : 88건 492억원
 - 사업시기 미도래 : 26건 62억원
 - 겨울축제 사업 : 20건 11억원
 - 토지협의등 기타 : 37건 75억원으로
- 사업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명시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수	금 액	비율(%)	비고
합 계	171	64,055,010	100.00	
기 획 감 사 실	2	18,373	0.03	
문 화 관 광 과	55	18,828,578	29.45	
종 합 민 원 과	1	113,911	0.18	
자 치 행 정 과	2	609,711	0.95	
재 무 과	1	100,000	0.16	특별회계
경 제 체 육 과	10	5,637,722	8.82	특별회계포함
환 경 위 생 과	7	605,041	0.76	
산 림 과	5	346,512	0.54	
안 전 건 설 과	27	14,298,156	22.36	
도 시 주 택 과	11	2,998,444	4.69	
올 림 픽 추 진 단	2	156,600	0.24	
올 림 픽 운 영 과	8	4,109,816	6.43	
올 림 픽 시 설 과	7	3,152,027	4.93	
보 건 의 료 원	3	2,300,071	3.60	
농 축 산 과	11	2,432,746	3.80	
기 술 지 원 과	2	316,686	0.50	
상하수도사업소	17	8,030,616	12.56	특별회계포함

※ 2015년도 결산결과 명시이월 확정액 : 178건/ 439억원

- 3회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비 집행기한이 촉박함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최소 2회추경까지는 안정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일반회계 세입 : 원안의결
- 일반회계 세출 : 원안의결
- 특별회계 세입 : 원안의결
- 특별회계 세출 : 원안의결
- 계속비사업 : 원안의결
- 명시이월사업 : 원안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음

붙임 :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결조서 1부.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 결 조 서

1. 예산총칙

○ 제1조 : 변동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 예산총액	비 고
합	계	453,391,977	
일반회계		389,019,117	
특별회계		64,372,860	
공기업특별회계		35,600,45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600,454	
기타특별회계		28,772,40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4,274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860,5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1,136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51,544	
수질개선특별회계		26,159,841	
주택사업특별회계		250,44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04,654	

-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금회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 제4조 :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 제6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3,147,832천원으로 한다.
- 제7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000,000천원으로 한다.
- 제8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 :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포함) 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2. 예산의결 내역

일반회계

- 세 입 : 변동사항 없음
- 세 출 : 변동사항 없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 변동사항 없음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 변동사항 없음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 변동사항 없음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 변동사항 없음

계속비사업 : 변동사항 없음

명시이월사업 : 변동사항 없음